

구인자

구인자

구인자



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해

사업주가 알아야 할것은?

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

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)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·권장하고 있습니다. (법제5조)

※ 워크넷에서 활용(공지/뉴스/자료)알림게시판>서식자료실
→ www.work.go.kr 검색

채용광고시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은?

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. (법제8조)
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 (법제10조)

채용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할 것은?

거짓채용광고 금지

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.(법제4조제1항)

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
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. (법제4조제2항)

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. (법제4조제3항)

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. (법제4조제4항)

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채용심사비용(면접비 등) 부담

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. (법제9조)

※ 다만,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(법제9조)
(예시)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

위반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

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. (법제11조제1항)

※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

위반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. (법제11조제4항)

위반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참고

반환 청구기간 :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~180일
기간내에서 사업주가 정하는 기간

반환 이행기간 :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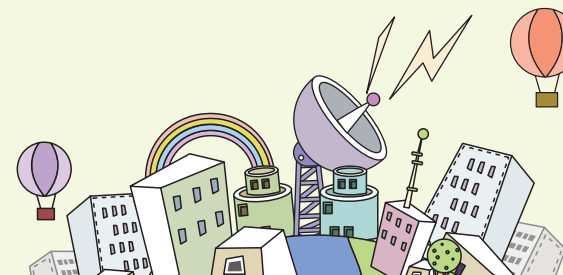
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, 보관기간,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,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 (법제11조제6항)

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이란?

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~180일 기간 내에서 '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'을 사업주가 정하는 기간

※ 채용여부 확정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



고용노동부장관은 입사지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
워크넷에서 활용(공지/뉴스/자료)알림게시판>서식자료실)

※ 세부 기업내용은 워크넷 '서식자료실'에서 활용

표준 이력서(안) 및 자기소개서

<1면>

<필수항목>

지원자성명 한글
 영문

주소 (우편번호)
(현거주지)

연락처	전화번호	전화	휴대전화
	전자우편		

주요 경력사항	회사명	담당 업무(직무내용)	근무기간(연, 월)
			년 월 ~ 년 월
			년 월 ~ 년 월

자격증 및 특기사항	관련 자격증		(년 월 취득)
			(년 월 취득)

자기소개 등 활동사항				
-------------	--	--	--	--

취업지원 대상자 여부	보훈번호		
장애인 여부	장애종별	등급	장애인 등록번호
저소득층 여부	구분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수급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보호대상자
	해당여부		

※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, 행위, 연구실적, 특허 등 항목 마련

구직자

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면? (법제4조제3항)

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다면? (법제4조제4항)

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응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?

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. (법제11조제1항)

※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(법제11조제1항)

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

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'14일에서 180일'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

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.(법제11조제4항)

※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(법제11조제1항)

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참고

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

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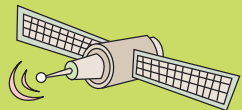
 구직자가 위 내용과 관련되어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?

해당 구인기업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(고용관리과, 일부 지역협력과)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 (뒷면 지방관서 연락처 참조)

채용절차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담당자 연락처

지 역	지 청	부 서	연 락 처
서울	본 청	고용관리과	02-2250-5815
서울	서울강남	고용관리과	02-3465-8409
서울	서울동부	고용관리과	02-2142-8455
서울	서울서부	고용관리과	02-2077-6142
서울	서울남부	고용관리과	02-2639-2144
서울	서울북부	고용관리과	02-950-9731
서울	서울관악	고용관리과	02-3282-9125
중 부	본청(인천)	고용관리과	032-460-4511
중 부	인천북부	지역협력과	032-540-5625
중 부	부 천	지역협력과	032-320-8985
중 부	의정부	고용관리과	031-850-7714
중 부	고 양	고용관리과	031-931-2901
경 기	경기(수원)	고용관리과	031-259-0212
경 기	성 남	고용관리과	031-788-1584
경 기	안 양	지역협력과	031-463-7383
경 기	안 산	고용관리과	031-412-1914
경 기	평 택	지역협력과	031-646-1299
강 원	강원(춘천)	고용관리과	033-269-3565
강 원	강 릉	지역협력과	033-650-2533
강 원	원 주	지역협력과	033-769-0834
강 원	태 백	지역협력팀	033-550-8604
강 원	영 월	지역협력팀	033-371-6212
부 산	본 청	고용관리과	051-860-2152
부 산	부산동부	지역협력과	051-559-6660
부 산	부산북부	지역협력과	051-330-9805
부 산	창 원	고용관리과	055-239-6522
부 산	울 산	고용관리과	052-228-1984
부 산	양 산	지역협력과	055-370-0913
부 산	진 주	지역협력과	055-760-6544
부 산	통 영	지역협력과	055-650-1939
대 구	본 청	고용관리과	053-667-6319
대 구	대구서부	지역협력과	053-605-9009
대 구	포 향	고용관리과	054-271-6773
대 구	구 미	지역협력과	054-450-3573
대 구	영 주	지역협력팀	054-639-1131
대 구	안 동	지역협력팀	054-851-8079
광 주	본청(제주포함)	고용관리과	062-609-8892
광 주	전 주	고용관리과	063-240-3325
광 주	익 산	지역협력과	063-839-0002
광 주	군 산	지역협력과	063-450-0514
광 주	목 포	지역협력과	061-280-0209
광 주	여 수	지역협력과	061-650-0119
대 전	본 청	고용관리과	042-480-6226
대 전	청 주	고용관리과	043-299-1112
대 전	천 안	고용관리과	041-560-2871
대 전	충 주	지역협력과	043-840-4023
대 전	보 령	지역협력과	041-930-6210

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
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
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
권익을 보호합니다.

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

 고용노동부
Ministry of
Employment and Labor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

법 적용사업장은?

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
사업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공무원 채용은
제외), 공공기관

300명 이상 사업장,
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

2015. 1. 1시행

100명~300명 미만 사업장,
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

2016. 1. 1시행

30명~100명 미만 사업장,
국가 및 자치단체, 공공기관

2017. 1. 1시행

구직자



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것은?

 거짓채용광고

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 하거나 사업장을
홍보하기 위해 거짓채용 광고를 했다면 ? (법제4조제1항)

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원이하의 벌금

구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
불리하게 변경 했다면 ? (법제4조제2항)

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